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8-1427호

갈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1호(2011.09.29)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6-75호(2016.09.01)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사항)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7-90호(2017.09.07)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7-110호(2017.11.30)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고시된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 갈현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에 변경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재공람공고 합니다.
2. 상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은 재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공람기간: 2018. 11. 29. ~ 2018. 12. 14. (14일 이상)

2. 공람장소

-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 351-7365)
-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388-0066)

3. 인가신청 요지

- 1) 정비사업의 명칭: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
 - 구역면적: 238,850.90 m^2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 90개월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유국형)
- 2)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37(갈현동), 3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생략 (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단위	사 업 계 획
면 적	구역면적(대지면적)	(m^2)	238,850.90 m^2
건축계획	건축면적(건폐율)	m^2 (%)	57,319.808 m^2 (32.61%)
	연면적(용적률)	m^2 (%)	650,134.93 m^2 (229.08%)
	층수(높이)	층(m)	지하6층/지상22층 (62.15m)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규모	-	아파트 36개동, 4,116세대 등

8.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생략 (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9. 재공람사유 :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변경

⇒ 관계부서 협의 결과 및 타 법령에 의한 심의(평가) 결과 반영으로 세대수 감소 등
(기존: 4140세대 ⇒ 변경: 4116세대)

10. 기타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및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공람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람기간 내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351-7365)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람공고 내용은 관계부서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 란 의 견 서

사 업 명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람기간	2018년 11월 29일 ~ 2018년 12월 14일			
대 상 물 건 지	토지 :			
	건물 :			
의 견 제 출 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내 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8년 11월 29일

규 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79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처리예정기간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통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공무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청취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상황 등을 확인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① 세무부서장이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

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조사기간 종료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9조(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의견청취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접수 사실을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관련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0조(세무조사 기간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법 제8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그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2조(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9조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 사유, 연장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야 한다.

제17조(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의 있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지방세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

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 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

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5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납세자보호관이 임명 또는 위촉된 이후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고충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 계	
	주소			전화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접수일	납세자			민원내용	처리여부			비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처리 결과	결과 통지일	처리 기간	

[별지 제3호서식]

은 평 구

수신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통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당초처리기간		. . .	처리에정기간	. . .
기간연장사유				

끝.

은 평 구 청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4호서식]

은 평 구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까지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고충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주 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고 충 내 용				

붙임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은 평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신청일자	. . .	처리일자	. . .
고충내용 (요 약)				
00과 의 건	검토의견			
	처리결과 (직권시정 하였을 경우)			

붙임 고충민원서류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6호서식]

은 평 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귀 부서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열람·제출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신청일자	. . .
고 충 내 용				
요 구 자 료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7호서식]

은 평 구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민원내용				
처리내용				

끝.

은 평 구 청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은 평 구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주 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내용				
시정요구 내용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9호서식]

은 평 구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민원 내용				
의결 내용				

붙임 의결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11호서식]

은 평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조사대상 세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은 평 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기간연장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주 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붙임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13호서식]

은 평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송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장 신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 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검토 의견	연장 여부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14호서식]

은 평 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결정 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15호서식]

은 평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처리 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16호서식]

은 평 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접수 통보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접 수 사 항	당초 조사기간			
	연기 신청기간			
	연기 신청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17호서식]

은 평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연기신청 기간				
○○과 의견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18호서식]

은 평 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결정 사항	연기여부			
	연기된 조사기간			
	결정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19호서식]

은 평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처리결과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20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권리보호 대상	① 요청기관	② 세무조사	③ 세정행정	④ 체납처분	

⑤ 권리보호 요청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
-------------	---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⑥ 첨부서류	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21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접수일	납세자			요 청 사 유	처 리 여 부			비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처리 결과	결과 통지일	처리 기간	

[별지 제22호서식]

은 평 구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 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기 간 연 장	기간연장	당초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사유		

끝.

은 평 구 청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23호서식]

은 평 구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내용				
처리사유				

끝.

은 평 구 청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24호서식]

은 평 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주 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				
시정요구 내용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25호서식]

은 평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 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26호서식]

은 평 구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결과				
처리사유				

끝.

은 평 구 청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27호서식]

은 평 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어 귀 부서의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하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 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필요한 자료 명세				

붙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28호서식]

은 평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내용				
○○과 검토의견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29호서식]

은 평 구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 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필요한 자료 명세	1 .조사대상세목			
	2 .조사대상기간			
	3 .조 사 사 유			
	4 .기 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30호서식]

은 평 구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아래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니 세무조사를 일시중지 할 것을 요청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년도	
조 사 반			조 사 유 형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사유				
세무조사 중지기간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5291호, 2017.12.26 공포, 2018.1.1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을 정함 (제1조)

나. 고충민원의 신청, 처리기간 연장, 확인, 처리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신청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권리보호요청 접수, 처리기간 연장,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8년 11월 29일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123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380명”을 “1,39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353명”을 “1,36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제2항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제4조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분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394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85				
3급	1	1			
4급	8	6	1	1	
5급	63	34	1	12	16
6급 이하 소계	1,311				
전문경력관	2				
별정직 계	8				
5급 상당	2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6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1,380명</u>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1,394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1,353명</u>						1. ----- : <u>1,367명</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별 표3]						[별 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분청	의사 사무국	회국	보건소	동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분청	의사 사무국	회국	보건소	동
총 계		<u>1,380</u>													
정무직 계		(생략)													
구청장		(생략)						구청장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u>1,371</u>													
3급		(생략)						3급		(현행과 같음)					
4급		(생략)						4급		(현행과 같음)					
5급		(생략)						5급		(현행과 같음)					
6급이하소계		<u>1,297</u>													
전문경력관		(생략)						전문경력관		(현행과 같음)					
별정직 계		(생략)													
5급 상당		(생략)						5급 상당		(현행과 같음)					
6급 상당 이하 소 계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일자리·아동보호·재난안전 등 국가 주요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원을 확대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순증 : 14명

1)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 (제2조)

○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 1,380명 → 1,394명(증 14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53명 → 1,367명(증 14명)

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별표 3)

○ 정원의 총수 : 1,380명 → 1,394명(증 14명)

○ 일반직공무원

- 일반직 계 : 1,371명 → 1,385명(증 14명)

- 6급 이하 소계 : 1,297명 → 1,311명(증 14명)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8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123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전단 중 “협치문화국”을 “교육문화국”으로 한다.

제4조 중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을 “감사담당관·협치담당관·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사, 교육운영, 조직, 보안, 청사관리, 시책사업추진, 공무원 단체, 대외협력,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2. 구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 예산, 법제심사, 소송, 창의혁신, 통계에 관한 사항

제5조의2 제목 “(협치문화국에 두는 과)”를 “(교육문화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치문화국에 민관협치과·문화관광과·교육청소년과·여성정책과·생활체육과”를 “교육문화국에 시민교육과·문화관광과·가족정책과·생활체육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치문화국장”을 “교육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민교육, 학교지원, 마을학교, 청소년지원, 학교급식, 장학사업에 관한사항

제5조의2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족정책, 여성복지, 가족지원, 아동친화에 관한 사항

4. 체육복지, 생활체육,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재무과·사회적경제과·생활경제과·세무1과·세무2과·지적과”를 “재무과·사회적경제과·일자리경제과·세무1과·세무2과·지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장의 지도, 공장, 소비자보호, 통신판매업, 농·수·축산 유통, 노동조합, 공공일자리, 취업지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주거재생과·도시계획과·도시경관과·건축과·청소행정과·맑은도시과”를 “주거재생과·도시계획과·도시경관과·건축과·자원순환과·환경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행정의 종합, 주택재건축, 한옥건축, 영선업무, 재건축구역별 공공관리업무 및 위험시설물 관리, 건축안전업무

5. 폐기물, 환경미화원, 청소장비, 청소대행업, 자원회수시설, 종량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토목과·치수과·공원녹지과”를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도로과·치수과·공원녹지과”로 한다.

제10조의3 중 “의약과”를 “보건의료과”로 한다.

조례 제100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제7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조례 제111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제4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조례 제114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21항 및 제2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㉑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별표1의 상황실 란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제7조제2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례 별표1의 총괄지원반장 란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 건설·수송 지원반장 란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 보급지원반장 란 중 “생활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제3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 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 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중 “의약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 ⑤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교육문화국장”으로 한다.
- 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립합창단 운영조례 제2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교육문화국장”으로 한다.
- ⑦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제4항제1호중 “민관협치과장”을 “협치담당관”으로, “생활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 ⑧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제5호 중 “생활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례 제7조제2항 중 “유통관리팀장”을 “소상공인팀장”으로 한다.
- ⑨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제7조제2항 중 “맑은도시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 ⑩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
- ⑪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2항 중 “맑은도시과장”을 “환경과장”으로 “의약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 <u>협치문화국</u> ·주민복지국·재정경제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을 둔다.	제3조의2(국의 설치) ----- -----행정안전국· <u>교육문화국</u> ·주민복지국·재정경제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u>감사담당관</u> · <u>홍보담당관</u> 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 <u>감사담당관</u> · <u>협치담당관</u> · <u>홍보담당관</u>
제5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국에 <u>총무과</u> ·기획예산과·자치안전과·전산정보과·민원여권과를 둔다.	①----- <u>행정지원과</u> ----- -----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인사, 교육운영, 조직, 보안, 청사관리, 시책사업추진, <u>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u>	1. ----- <u>공무원단체</u> , <u>대외협력</u> , <u>지방의회에 관한사항</u>
2. 구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 예산, 법제심사, <u>소송</u> , <u>지방의회</u> , <u>창의혁신</u> , <u>통계에 관한 사항</u>	2. ----- ----- <u>소송</u> , <u>창의혁신</u> , <u>통계에 관한 사항</u>
3. ~7. (생략)	3. ~7. (현행과 같음)
제5조의2(<u>협치문화국</u> 에 두는 과)	제5조의2(<u>교육문화국</u> 에 두는 과)
① <u>협치문화국</u> 에 <u>민관협치과</u> · <u>문화관광과</u> · <u>교육청소년과</u> · <u>여성정책과</u> · <u>생활체육과</u> 를 둔다.	① <u>교육문화국</u> 에 <u>시민교육과</u> · <u>문화관광과</u> · <u>교육청소년과</u> · <u>가족정책과</u> · <u>생활체육과</u> -----.

현행	개정안
② <u>협치문화국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주민참여제도, 협치공동체, 시민교육정책, 자원봉사에</u> 관한 사항 2. (생략) 3. <u>교육정책, 청소년지원, 학교급식, 장학사업에</u> 관한 사항 4. <u>여성정책기획, 여성복지증진, 다문화가족에</u> 관한 사항 5. <u>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시설에</u> 관한 사항 제7조(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① 재정경제국에 재무과·사회적경제과·<u>생활경제과</u>·세무1과·세무2과·지적과를 둔다. ②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시장의 지도, 공장, 소비자보호, 통신판매업, 농·수·축산 유통, 노동조합, 공공일자리, <u>취업지원</u>에 관한 사항 6. (생략) 제8조(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② <u>교육문화국장</u>----- ----. 1. <u>시민교육, 학교지원, 마을학교, 청소년지원, 학교급식, 장학사업에</u>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삭제> 3. <u>가족정책, 여성복지, 가족지원, 아동친화</u>----- 4. <u>체육복지</u>----- ----- 제7조(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① ----- 재무과·사회적경제과·<u>일자리경제과</u>·세무1과·세무2과·지적과-----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취업지원, 소상공인 지원</u>에 관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제8조(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현행	개정안
① 도시환경국에 주거재생과·도시계획과·도시경관과·건축과·<u>청소행정과·맑은도시과</u>를 둔다. ② 도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건축행정의 종합, 주택재건축, 한옥건축, 영선업무, 재건축구역별 공공관리업무 및 <u>위험시설물관리</u> 5. 폐기물, 환경미화원, 청소장비, 청소대행업, 자원회수시설, <u>종량제</u>에 관한 사항 6. (생략) 제9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안전교통국에 교통행정과·<u>교통지도과·토목과·치수과·공원녹지과</u>를 둔다. 제10조의3(보건소에 두는 과 등)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u>의약과</u>, 보건지소를 둔다.	① ----- 주거재생과·도시계획과·도시경관과·건축과·<u>자원순환과·환경과</u>-----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u>위험시설물관리, 건축안전업무</u> 5.----- ----- <u>종량제, 폐기물처리시설</u>에 관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제9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 교통행정과·<u>주차관리과·도로과·치수과·공원녹지과</u>----- 제10조의3(보건소에 두는 과 등) -- ----- <u>보건의료과</u>-----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민선7기를 맞아 협치를 강화하고 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성장을 지원하는 조직 운영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사업무 통폐합으로 부서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협업행정기관을 만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문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 명칭변경 (제3조의2)

○ 협치문화국 → 교육문화국

나. 부구청장 직속 소관 과 조정 (제4조)

○ 민관협치과 : 협치문화국 → 부구청장 직속

○ 명칭변경 : 민관협치과 → 협치담당관

다. 행정안전국 소관 과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추가 (제5조)

○ 총무과 → 행정지원과

○ 국장의 분장사무에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추가

라. 협치문화국 명칭변경 및 소관 과·분장사무 조정 (제5조의2)

○ 명칭 변경 : 협치문화국 → 교육문화국

○ 소속 과 변경

- 민관협치과 : 협치문화국 → 부구청장 직속

○ 명칭변경

- 교육청소년과 → 시민교육과, 여성정책과 → 가족정책과

○ 국장의 분장사무 중 일부 삭제

- 주민참여제도, 협치공동체,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 국장의 분장사무 중 일부 추가

- 시민교육, 학교지원, 마을학교에 관한 사항

마. 재정경제국 소속 과 명칭변경 (제7조)

○ 생활경제과 → 일자리경제과

바. 도시환경국 소속 과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추가 (제8조)

- 청소행정과 → 자원순환과, 맑은도시과 → 환경과
- 국장의 분장사무에 ‘건축안전업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추가
사. 건설교통국 소속 과 명칭 변경 (제9조)
- 교통지도과 → 주차관리과, 토목과 → 도로과
- 아. 보건소 소속 과 명칭 변경 (제10조의3)
- 의약과 → 보건의료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8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123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구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1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심의하기”를 “심의·의결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연임”을 “두 차례만 연임”
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요청 할”을 “요청할”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를 “결산서와 함께”로, “승인을 얻어야”를 “의결을 받아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구금고”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5. · 6. (생략)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구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5. · 6. (현행과 같음)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1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u>심의하기</u>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한다</u> . 1. ~ 6. (생략) ③ (생략)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 ----- ----- <u>심의·의결하기</u> -----. ② ----- <u>심의·의결한다</u> . 1.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현행	개정안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u>다만,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1. 2. (생략) ⑤ (생략) ⑥ <u>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⑦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u>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u>전임자</u>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u>요청</u>할 수 있다. ⑥ (생략)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u>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u>	----- ----. <u>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1.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삭제> ⑦ ----- - <u>두 차례만 연임</u>-. ----- ----- <u>전임위원 임기</u>-----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요청할</u> -----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u>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 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u>

현행	개정안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① (생략)	<u>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 2. <u>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3. <u>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u> 4.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u>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u>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 제출하여 <u>승인을 얻어야</u> 한다.	② ----- ----- <u>결산서와 함께</u> ----- ----- <u>의결을</u> <u>받아야</u>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통합관리기금의 계획적이고 건전한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변경사항 반영(제2조제4호)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회계법」 제38조

나.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명확화(제4조)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3년 12월 12일 제정·시행되어 존속기한 5년(2018.12.11.) 도래

- 존속기한을 기한 만료 후부터 5년인 2023년 12월 11일로 연장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규정 사항 반영(제9조제4항)

-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라.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 삭제(제9조제6항)

-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마. 위촉직 위원 장기연임 제한(제9조제7항)

- 임기 2년, 연임제한 없음 → 임기 2년, 연임 2회(총 6년)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법제처 표준 문안으로 보완(제12조)

- 위원회 의결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 사항 반영(제15조제2항)

- 기금결산보고서 의회 제출 :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 결산서와 함께 제출

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8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124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은평구”를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부분개정”을 “일부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을 “산하 기관 또는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제 담당부서의 장”을 “법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제4조제2항”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따른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제6항 중 “해당년도”를 “해당 연도”로, “발의당시”를 “발의 당시”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은평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8조”를 “제28조”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 ②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입법계획을 수립하는 자치법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u>은평구</u> 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 6. (생략)	제2조(정의) ----- -----. 1. ----- <u>은평구</u> (이하 "구"라 한다)----. 2. ~ 6.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입법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u>조례가</u>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 ----- <u>조례에서</u> -----.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u>다음</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 ----- ----- ----- --. ----- 「행정절차법」 제41조 <u>제1항</u> ----- -----.

현행	개정안
1. <u>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u> 2. <u>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u> 3. <u>상위 법령 및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u> 4. <u>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u> 5. <u>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② (생략)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예고문안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입법예고문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u>기타</u> 필요한 사항 ② (생략)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예고문 작성) ①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의</u>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예고방법) ① ----- ----- ----- -----

현행	개정안
내용의 전문(<u>부분개정</u> 의 경우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 <u>일부개정</u> ----- ----- -----.
②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방송 및 <u>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u> 의 게시판·간행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 ----- ----- <u>산하 기관 또는 관계 기관</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입법 주관부서의 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u>없는 한</u>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조 제 1항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u>법제담당부서의 장</u>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기간) ① ----- ----- ----- <u>없으면</u> -----. ----- ----- ----- ----- <u>법제업무 담당 과장</u> -----.
② <u>제4조제2항의 규정</u> 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u>제1항의 규정</u> 을 준용한다.	② <u>제4조제2항</u> ----- ----- ----- <u>제1항</u> -----.
제8조(입법안의 열람 등) ① <u>예고된 입법안의 전문 원문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얻고자 하는</u>	<삭 제>

현행	개정안
<u>사람은 입법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 ② <u>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열람·복사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 ③ <u>입법안의 사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우편으로 송부요청하는 경우에는 우편요금을 포함한다)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안의 열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우편으로 사본을 송부 요청하는 경우 우편요금은 제외한다)를 징수하지 아니한다.</u> <u>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한 경우</u> <u>2.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u> <u>3.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u>	

현행	개정안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4.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④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열람·복사요청에 응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청자에게 구두로 알려주거나 사본에 표기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1. 조례안의 경우 :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의회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2. 규칙안의 경우 : “이 규칙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⑤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본 앞면에 수입인증기로 인증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① ~ ③ (생략)	제10조(공청회) ① ~ ③ (현행과

현행	개정안
④ 그 밖에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자치법규의 입법의견 제출) ① (생략) 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구의회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같음) ④ ----- -----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자치법규의 입법의견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마련-----.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2호서식----- 미리 ----- -----

현행	개정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2. (생략) ③ (생략)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① ~ ⑤ (생략)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u>해당년도</u>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u>발의당시</u>의 가격으로 한다. 제15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①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u>은평구의회</u>에 안전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전문)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u>해당 연도</u> ----- ----- <u>발의 당시</u> -----. 제15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① ----- ----- <u>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u>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현행	개정안
②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 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수정하여 조례와 법률 간의 해석 혼돈을 피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 구체화(제1조)

나. 입법예고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개정
(제4조제1항)

다. 입법안의 열람 등에 관한 사항 삭제(제8조)

라. 조례가 법령을 준용할 수 없으므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개정
(제10조제4항)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맞춤법 규정에 따른 정비(제2조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8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124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가구원수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자구분	☐ 수급자 ☐ 장애인 ☐ 홀로 사는 노인 ☐ 기타				담당공무원 확인란
지원 시설명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은평구청장 귀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 등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의 정의(제2조)

나.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제4조 ~ 제5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8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124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비”를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비”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은평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 한다.

제2조의2 제목 “(보조금교부의 순위 등)”을 “(보조금 교부의 순위 등)”으로 하고,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우선 순위”를 “우선순위”로, “결정 할”을 “결정할”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7% 범위 내에서”를 “7퍼센트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7% 범위 내에”를 “7퍼센트 범위에”로 한다.

제4조 제목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각급 학교”를 “각급학교”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1인”을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의회 의장이”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로,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하여 풍부”를 “풍부”로, “자 5인”을 “사람 5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청의 장”으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 제목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 비치”를 “작성·비치”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 학교”를 “각급학교”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교부목적”을 “교부 목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시”를 “심의 시”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 학교”를 각각 “각급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부목적”을 “교부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중 “교육경비보조”를 “교육경비 보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 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 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목적) ----- -----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비-----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 -----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7.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 -----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제2조의2(보조금 교부의 순위 등) 제2조에 따른 ----- 우선순위----- ----- 결정할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7%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국비·시비 보조금(구비 분담금 포함)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7%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 해당 연도 ----- ----- ----- 7퍼센트 범위에서 ----- ----- ----- ----- ----- 7퍼센트 범위에 -----.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명을 포함한 11명-----.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u>위촉한다</u>. 1. 구 국장급 공무원 <u>2인</u> 2. <u>구의회 의장이</u> 추천하는 구의원 <u>2인</u> 3. 그 밖에 학교교육에 <u>관하여</u> <u>풍부</u>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u>자 5인</u> 4. 관할 <u>교육청 교육장이</u>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u>1인</u> ④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 잔임기간</u>으로 한다. ⑤ (생략)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u>통할한다</u>. ② (생략)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u>1인</u>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금업무를 관장하는	③----- ----- <u>사람</u> ----- ----- <u>위촉하며 위촉직</u> <u>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u> <u>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u> <u>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1. ----- <u>2명</u> 2. <u>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u> -- <u>2명</u> 3. ----- <u>풍부</u>----- ----- <u>사람 5명</u> 4. --- <u>교육청의 장</u>----- ----- <u>1명</u> ④----- ----- <u>한</u> <u>차례만</u> -----. ----- <u>전임위원</u> <u>임기의 남은 기간</u>--.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 <u>총괄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 <u>1명</u>----- -----

현행	개정안
과장이 된다.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1. <u>당해년도</u>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1. <u>해당 연도</u>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4. <u>기타</u>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u>부의하는</u> 사항	4. <u>그 밖에</u> ----- -----회의에 부치는 -----
제8조(회의) ①·② (생략)	제8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u>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 <u>범위</u> ----- -----.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u>작성 비치</u>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 ----- <u>작성·비치</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u>각급 학교</u> 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u>각급 학교</u>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u>제10조의 규정에 의한</u>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u>제7조의 규정에 의한</u>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구청장은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u>교부목적</u>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u>심의시</u> 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중장기 사업계획서 제출 및 학교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 <u>제10조에 따라</u> ----- ----- ----- <u>제7조에 따라</u>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라</u> ----- ----- ----- ----- ----- <u>교부 목적</u> ----- -----. ③----- <u>심의 시</u> ----- ----- ----- -----.
제12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u>각급 학교</u> 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u>각급 학교</u>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제12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u>각급 학교</u> ----- ----- -----. ②----- <u>각급 학교</u> ----- -----

현행	개정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u>교부목적</u>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 4. (생략)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u>다음 각 호의 보고서</u>를 구청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u>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u> 2. <u>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u> 3. <u>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u> 4. <u>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②·③ (생략)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u>교육경비보조</u>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 1. ----- <u>교부 목적</u> ----- ----- 2. ~ 4. (현행과 같음)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 <u>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u>----- -----.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준용) ----- ----- <u>교육경비 보조</u>-----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의무)를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지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가 없는 서류 제출의무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제13조제1항제1호·2호·4호)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제1조~제14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8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124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담당”을 “공시지가 또는 주택가격 업무 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를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으로,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를 “않도록 하여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을 “그 위원을 해촉할”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중 “은평구”를 “서울특별시 은평구”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제1조(목적) -----		
<u>한다.</u>)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제2조(구성) ① -----		
<u>한다.</u>)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u>한다</u>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u>업무담당</u> 국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와 관련 있는 담당	② -----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u>법</u>	<u>시행령 제74조제3항</u> 에 따라 다음	----- <u>공시지가 또는 주택가격</u>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u>한다.</u>)이	<u>업무 담당</u> --.		
위촉한다. <u>위촉위원의 경우 특정</u>	<u>성이</u>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③ -----		
<u>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u> 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u>시행령」 제74조제3항</u> -----		
		----- <u>한다</u> ---		
		----- <u>위촉직 위원의 경우</u>		
		<u>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u> -----		
		<u>않도록 하여야</u> -----.		

현행	개정안
1.·2. (생략) 제4조(기능) 위원회는 <u>법 제25조제1항</u>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7. (생략)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u> 1. <u>위원이 사망,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 2. <u>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 3. (생략) 4. <u>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u> <신설> 제12조(수당 지급) <u>은평구</u>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u>범위 내에서</u>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1. ~ 7.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해촉) ----- ----- ----- 그 위원을 해촉할 ----- -----. 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u>직무</u>----- ----- 3. (현행과 같음) 4.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 5. <u>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 제12조(수당 지급) <u>서울특별시 은평구</u> ----- ----- <u>범위</u>-----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해촉 관련사항 등을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4조 제4항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변경(제7조)

-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의 해촉”으로 변경
- 위원의 해촉 사유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변경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 규정이 누락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제7조제5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제1조, 제2조, 제4조, 제12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8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124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도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 태양광 도로표지병,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두려움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을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6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제8조제6호(중전의 제2호) 중 “각종”을 “도시재생사업, 각종”으로, “환경개선”을 “환경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5.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7. 공공기관·단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구청장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1조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3.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 디자인위원회가”를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 디자인위원회에서”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침입범죄 피해여부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에 관한 사항
6.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중 “서울서부경찰서, 서울은평경찰서, 서울서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범죄예방 환경설계”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 태양광 도로표지병,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3조(기본원칙) ----- -----. 1. ~ 5. (현행과 같음) 6.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두려움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 ----- ----- -----

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
여야 한다.

<신 설>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
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생 략)

<신 설>

-----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토록 노력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

1. (현행과 같음)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
예방 환경설계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
방 환경개선 사업

5. 방법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
하기 위한 사업

6. 도시재생사업, 각종 -- 환경 개
선 -----

8. (현행 제3호와 같음)

7. 공공기관·단체·법인 등을 대
상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
을 위한 교육

<신 설>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8조의2(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

구청장은 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방법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1조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3.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의 설치) ① -----

----- 위하여 -----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신 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
에 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 디자인
위원회가 겸한다.

<신 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
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에는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
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 디자인위
원회에서 ----.

제9조의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
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
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침입범죄 피해여부에 관한 사
항
5. 지원 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
에 관한 사항
6.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에 관
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 경

서울서부경찰서, 서울은평경찰서,
서울서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
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최근 각종 범죄 증가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도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구가 시행하는 사업에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법(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을 적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 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 원칙을 규정함 (제3조)
- 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제5조)
- 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제8조)
- 마. 법률에 의한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방범시설 지원 규정을 마련함 (제8조의2)
- 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9조, 제9조의2)
- 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0조)